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3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11. 13(금)
- 라. 회부일자 : 2020. 11. 17(화)

2. 제안이유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²⁾

나. 출연 필요성

- 1)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원 지원
- 2) 구에서 위탁하는 문화예술시설 운영과 지역축제 등 위·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3)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

다. 출자금 규모 : 6,172,991천원

▸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의결

4. 참고사항

가. 출연금 편성내역, 지출예산총괄(부서별)

나.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²⁾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이사장 : 정병재), 이사 및 감사 : 11명[이사장 1, 대표이사 1, 이사 8(당연직1)], 감사:1명, 정규직 직원 : 정원64명, 현원60명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2021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2020. 11. 13. 제출한 안으로,
-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금천구 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한 (재)금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구에서 추가로 위탁하는 문화예술시설인 금천뮤지컬스쿨 프로그램 운영,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위탁 운영, 스마트도서관 2개소 위탁 등의 신규 사업 증가가 있음.
- 2021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6,172,991천원임.

구분	2021년 문화재산 총 예산액	2020년 수익금 및 2019년 잉여금	출연금 요구액	비 고
금액	6,528,917	355,926	6,172,991	

※ 출연금 요구액 : 재단 전체 예산액 - 재단수익금 및 잉여금

※ 2020년 출연금 요구액 5,068,654천원 대비 21.8% 증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붙임 1) 출연금 편성내역 1부.
2) 지출예산 총괄(사업별)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1

출연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1년	2020년	증 감	비 고
계	6,528,917	5,259,787	1,269,130	
인건비 소계	2,311,381	1,983,122	328,259	
정규직급여	2,205,933	1,891,736	314,197	
비정규직급여	105,448	91,386	14,062	
퇴직 급여 총당금	210,994	161,800	49,194	
지역문화 진흥 사업비	433,435	336,359	97,076	
예술 진흥 사업비	879,701	369,197	510,504	
대외 협력 사업비	95,514	32,496	63,018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	1,407,616	1,408,614	△998	
일반운영비 소계	1,190,276	968,199	222,077	
지급임차료	50,340	6,840	43,500	
사무관리비	159,989	118,640	41,349	
차량유지비	1,080	1,080	-	
보험료 (신원보증보험)	1,600	1,300	300	
지급수수료	20,290	11,964	8,326	
공공요금및제세	44,500	25,546	18,954	
국내여비	156,240	146,160	10,080	
수선유지비	28,184	25,777	2,407	
도서인쇄비	3,000	1,600	1,400	
회의운영비	17,792	13,312	4,480	
행사홍보비	5,000	5,000	-	
업무추진비	9,000	9,000	-	
관서업무비	7,220	7,220	-	
교육훈련비	12,683	11,605	1,078	
복리후생비 (4대보험포함)	413,804	347,220	66,584	
포상금	4,800	4,800	-	
성과급 (기관경영평가)	254,754	231,135	23,619	

붙임2

지출예산 총괄(사업별)

(단위 : 천원)

연번	팀 명	2021년	2020년	비교증감	비고
합 계		6,528,917	5,259,787	1,269,130	
001	경영 지원팀	3,712,651	3,113,121	599,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신규사업 인원 및 의무고용인원 / 임금인상률 반영) 351,878천원 · 인건비 증액에 따른 퇴직급여,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 101,258천원 · 주사무소 관리비 임차료 이전 55,320천원 · 개인정보 강화 S/W도입 18,900천원 · 재단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12,000천원
002	문화 사업팀	433,435	336,359	97,0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신규편성 60,660천원 · 금천하모니벚꽃축제 비용증액편성 113,780천원 · 문화통장 예산 증액 편성 15,000천원 · 빈집프로젝트 예산감소 △107,000천원
003	예술 진흥팀	879,701	369,197	510,5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나래아트홀 조명 환경개선공사 4,500천원 · 금나래아트홀 장애인리프트 유지보수 1,380천원 · 금나래아트홀 공연전시비 증액 20,000천원 · 온라인공연 신규사업 편성 14,000천원 · 뮤지컬스쿨 신규사업 이관 443,353천원
004	도서관 운영팀	799,362	842,524	△43,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사서 사업 미시행 △95,555천원 · 작은도서관 및 스마트 도서관 신규편성 57,577천원 · SMS 비용 증액 편성 6,000천원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비용 감액 △14,400천원
005	독산 도서관	180,113	168,274	12,4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용 복합기 유지보수료 1,440천원 · 소방시설 점검 수선비 1,500천원 · 도서관 노후화로 집수정,저수조 자동제어 설치 5,700천원 · 코로나로인한 방역물품 2,159천원
006	가산 도서관	155,351	145,274	10,6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로우코딩 사업 신규 편성 3,000천원 · 소방시설 점검 수선비 1,500천원 · EHP분해 및 필터청소 5,000천원 · 코로나로인한 방역물품 2,159천원
007	금나래 도서관	81,911	76,552	10,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서비스 사업 신규 편성 1,200천원 · 코로나로인한 방역물품 2,159천원
008	시흥 도서관	190,879	175,990	8,0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실외기 수선비 4,200천원 · 코로나로인한 방역물품 2,159천원
009	정책실	95,514	32,496	63,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영화제 사업 신규 편성 50,000천원 · 후원회 초청 음악회 증액 6,500천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